## ●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-28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20조 및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-9호, 2018. 03. 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8년 6월 29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일부개정

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【별표】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【별표】의 고유번호 중 "2018-1-842"란, "2018-1-843"란, "2018-1-844"란, "2018-1-845"란, "2018-1-846"란, "2018-1-847"란, "2018-1-848"란, "2018-1-849"란, "2018-1-850"란, "2018-1-851"란, "2018-1-852"란, "2018-1-853"란 및 "2018-1-854"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				
2018-1-842	B-4-디벤조푸라닐붕산[B-4-Dibenzofuranylboronic acid; 100124-06-9] 및 이를 2				
	5% 이상 함유한 혼합물				
2018-1-843	트리부틸도데실포스포늄과 1,1,1-트리플루오로-N-[(트리플루오로메틸)술포닐]메탄술				
	폰아미드의 염 (1:1)[Tributyldodecylphosphonium salt with 1,1,1-trifluoro-N-[(triflu				
	oromethyl)sulfonyl]methanesulfonamide (1:1); 1002754-39-3] 및 이를 25% 이상 함				
	유한 혼합물				
2018-1-844	테트라에테닐실란[Tetraethenylsilane; 1112-55-6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				
	물				
2018-1-845	옥타노일 클로라이드[Octanoyl chloride; 111-64-8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				
2018-1-846	2-메틸-2-프로펜산 2-(디메틸아미노)에틸 중합체와 1-브로모테트라데칸 화합물[2-				
	(Dimethylamino)ethyl 2-methyl-2-propenoate homopolymer compd. with 1-bromo				
	tetradecane; 1306617-58-2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				
2018-1-847	N,N-비스(2-히드록시프로필) 탈로우 아미드[Amides, tallow, N,N-bis(2-hydroxy				
	propyl); 1454803-04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				
2018-1-848	B-(4-클로로-1-나프탈렌)붕산[B-(4-Chloro-1-naphthalenyl)boronic acid; 147102-97				
2010 1 040	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				
2018-1-849	프로폭실화 $N$ -(히드록시에틸) 코코 아미드[Amides, coco, $N$ -(hydroxyethyl), propoxyl				
	ated; 201363-52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				
2018-1-850	N-카르복시메틸- $N$ , $N$ -디메틸- $3$ -[[( $9Z$ )- $1$ -옥소- $9$ -옥타데세닐]아미노]-프로판 아미				
	늄 $[N-(Carboxymethyl)-N,N-dimethyl-3-[[(9Z)-1-oxo-9-octadecenyl]amino]-1-p$				
	ropanaminium, inner salt; 25054-76-6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				
2018-1-851	인산 이부틸, 아연 (2:1)[Dibutyl phosphorate, zinc salt (2:1); 25081-70-3] 및 이를 25% 이				
	상 함유한 혼합물				
2018-1-852	2-나프탈렌붕산[2-Naphthaleneboronic acid; 32316-92-0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				
	한 혼합물				
2018-1-853	니켈 디포메이트[Nickel diformate; 3349-06-2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				
2018-1-854	B-9-페난트레닐붕산[B-9-Phenanthrenylboronic acid; 68572-87-2] 및 이를 25%				
	이상 함유한 혼합물				

보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 "화관법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제3조(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4조(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·장비 및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6조(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※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(www.nier.go.kr)>법령정보>고시에 게 재되어 있음

## ◉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-29호

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,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「산업표준화법」 제5조(산업표준의 제정 등)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(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)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.

2018년 6월 29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한국산업표준(KS) 개정 예고

## 1. 표준번호 및 표준명

연번	구분	표준번호	표준명	비고
1	경미한개정	KSIISO11048	토양의 질 — 수용성 및 산가용성 황산염 측정방법	표준안
2	경미한개정	KSMISO18512	토양의 질 — 토양시료의 장·단기 보관 지침	표준안
3	경미한개정	KSIISO23611-3	토양의 질 — 토양 무척추동물의 시료채취-	표준아
	0 142/110	110110020011 0	제3부 : 애지렁이 채집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및 추출	JE 6.

\* 표준내용은 e-나라표준인증(www.standard.go.kr)에서 확인 가능